

在日同胞의 在留權에 關한 歷史的考察

大阪經濟法科大學 客員研究員 강 철 (姜徹)

일본에서의 재일동포재류권문제는 재일동포가 旅券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한것이 아니므로 一般的 外國人의 재류권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재일동포가 해방전 일본의 조선식민지정책-일본국적의 강요와 「皇民化」, 「創氏改名」, 強制連行 등에 의해 일본에 끌려왔다는 역사적특수성을 가지고있는 외국인이기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土地調査事業으로 조선인의 땅을 빼앗았으며 中國을 침략하기 위해 조선반도전체를 군사기지화하고 産米増殖計劃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조선인이 땅을 빼앗기고 살아갈 氣力마저 잃을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憲兵警察制度에 의한 武斷統治를 실시하여 이에 저항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등 조선은 조선인이 제 나라에 살수 없는 암흑천지로 되고말았다.

1. 在日同胞의 形成

(1)在日同胞의 形成過程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轉落한 1910년 8월 당시 이미 790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건너가있었지만 본격적인 渡日은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이후이다. 제1차세계대전에서 급속한 공업화를 이룬 일본은 深刻化된 勞動力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조선로동자를 일본에 끌려왔다.

그리하여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수는 해마다 늘어나 1915년에 3천 989명이었던것이 1917년에는 1만 4천 501명, 1919년에는 2만 8천 272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1919년의 3.1운동을 계기로 民族獨立運動이 양알되자 일본은 같은 해 4월에 「朝鮮人の 旅行取締에 關한 件」(總督府警務部令제3호)을 공포하고 조선인의 일본에로의 渡航을 制限함으로써 일본에서의 민족독립운동 탄압과 감시를 強化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선인의 일본에로의 도항은 警察의 허가, 「旅行證明書」가 필요하게 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不況에 빠진 일본은 다시 조선인低賃金로동자의 導入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고 1922년

12월에는 「日本渡航規則의 廢止」(總督府警務部令제153호)를 결정하여 조선인노동자를 無制限으로 끌어들였다.

1923년 9월 1일 關東大震災가 일어났을 때 일본의 반동지배층은 民心의 混亂을 리용하여 「조선인이 우물에 毒藥을 쳤다」 「조선인이 武裝해서 橫鳩에 上陸하였다」 등의 헛소문을 流布시켜 재일조선인에 대한 大虐殺을 감행하였다. 이 만행에 대하여 世界輿論이 일본을 非難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9월 17일에 이르러 軍部와의 협의를 거쳐 테로防止命令을 내렸는데 그동안에 6,000명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당하고 수천명의 負傷者와 逮捕者를 내었다고 한다.

이 關東大震災를 前後하여 일본은 內務省 警保局長名으로 각 府縣知事에게 「朝鮮人勞働者募集에 關한 件」(1923년 5월), 「朝鮮人에 對한 旅券證明書의 件」(1924년 2월)을 通達하고 1925년 4월에는 「治安維持法」, 6월에는 「過激思想宣傳取締에 關한 件」 등의 罰則法을 공포하였으며 1926년에는 「朝鮮人生活狀況調査法에 關한 件」을 通達하였다.

이에 앞서 1918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쌀騷動은 일본정부에 甚大한 打擊을 주었다. 이를 收拾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일본의 식량부족을 해소하는 대책으로서 조선에서 쌀을 더 많이 생산시키는 「産米増殖計劃」을 推進하였다. 이 계획은 1920년부터 35년까지의 15년간에 약 40만町步의 토지를 改良하여 약 920만石의 쌀을 증산하고 조선에서 매해 1,000만石의 쌀을 일본에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쌀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쌀값이 떨어진다는 日本地主들의 반대에 부딪쳐 마지막 수행단계에서 중단되고말았다.

일본정부는 이 계획집행시에 投下한 비용을 여러가지 명목을 붙여 모두 조선농민들에게 들쭉였는데 이 돈을 갚기 위해 농민들은 토지를 팔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살길을 찾아 일본에 건너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도항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여행증명서나 갖가지의 조선인 取締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었다.

부산水上警察署에서는 1925년 10월부터 渡航阻止制를 실시하였으며 당연히 도항용증명서의 발급도 제한하였다. 부산까지 왔다가 도항을 阻止당한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여 1925년 10월부터 1926년 12월까지의 사이에 약 14만 5천여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악질 중매인들에 의해 일본에 끌려간 사람이 늘어났다. 그것은 1920년에 3만 153명였던것이 1925년에는 13만 3천 710명, 1930년에는 29만 8천 91명이라는 수자가 증명하고 있다.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은 일본의 北海道나 東北地方, 사하린 등지에서 前近代的인 監獄같은 방에 갇히었으며 일본인의 절반도 못되는 낮은 임금으로, 하루에 12시간부터 16시간이나 일할것을 강요당했을뿐만 아니라 민족차별과 학대까지 받게 되었다.

(2)侵略戰爭과 재일동포

1929년 10월 미국 증권시장의 暴落으로부터 시작된 不況은 곧 世界的經濟恐慌에로 발전하였다. 만성적인 불황하에 있었던 일본도 이 경제공황의 영향을 직접 받았는데 그 영향을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조선에 넘겨췌었다. 일본기업들은 조선인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引下했던것이다.

한편 일본은 경제공황에 따른 國內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고 1931년 9월 중국 東北地方(滿洲)에로의 침략을 개시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침략에 반대하는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特別高等警察部를 설치하여 재일조선인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이해 6월 「不穩文書臨時取締法」을 공포하여 일본국내에서의 諷刺體制를 확립한 다음 1937년부터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다.

침략전쟁이 장기화되고 戰線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은 조선반도전체를 兵站基地로 만들었으며 로동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인의 強制動員을 計劃하고 1938년 4월에 「國家總動員法」을 公布, 조선인의 強制連行을 시작하였다.

또한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같은 해 12월에 「朝鮮 및 臺灣同胞에 對한 處遇改善에 關한 件」을 通達하여 조선인에게 選舉權, 被選舉權을 주고 國政參加의 길을 열고 일본에로의 渡航制限制度를 廢止하는 등의 懷柔策을 내놓았다.

이에 머물지 않고 일본정부는 1939년 7월에 「朝鮮勞務者內地移住에 關한 件」을, 10월에는 「國民徵用令」을 각각 施行하였다. 이들 「법률」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서 중세기적인 “人間사냥”을 강행하고 닥치는대로 조선인을 화물자동차에 실어 끌려가는 強制連行을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같은 해 11월에는 「改正朝鮮民事令」을, 12월에는 「朝鮮人の氏名에 關한 件」을 施行하여 조선인의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는 「創氏改名」을 強要하였다. 동시에 「朝鮮語使用禁止」와 「神社參拜」가 强요되고 많은 조선인이 일본인의 총알받이로 동원되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宣戰포고하고 태평양전쟁에 돌입하였다.

戰時下에서 일본은 「朝鮮에서의 戰時犯罪處罰의 特例에 關한 件」 및 「朝鮮臨時保安法」 등을 공포하여 재일조선인의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였으며 전국적인 一齊彈壓으로 122명을 체포, 구금하였다. 특히 약간이라도 지식이 있다고 보이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모두 체포, 구금하는가 아니면 特高警察의 監視下에 두었다.

일본은 朝鮮靑年을 전쟁터에 내몰기 위해 「徵兵令」(1942년 5월)을 施行하고 閣議에서 「朝鮮勞務者活用に 關한 件」과 「勤勞報國隊整備要綱」(1943년 4월)을 결정하였으며 또 7월과 11월에는 「學徒戰時動員體制確立要綱」과 「學徒兵制」를 시행하여 더 많은 조선인을 전쟁터에 내몰았으며 일본의 군수공장이나 탄광에 강제련행하였다. 그리고 1944년 8월에는 「女子挺身隊勤勞令」을 공포하고 수많은 朝鮮女性들을 連行하였을뿐만아니라 일본군의 慰安婦로 하였다.

이렇게 조선인의 일본에로의 강제련행이 시작되면서 재일조선인의 數도 急速히 증가해갔다. 1938년에는 79만 9천 865명이었던 재일조선인 人口가 1945년 8월에는 236만 5천 263명으로 增加하였다.

2. 解放後의 在日同胞

(1) 民族의 解放과 在日同胞

1945년 8월 15일. 이날은 조선민족이 해방된 역사적인 날이다. 재일동포에게 있어서도 민족의 해방은 暗黒으로부터의 解放이었으며 새 祖國建設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은 침략전쟁의 희생물로 强요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로부터의 아무런 補償도 없이 내쫓기우고 모든 生活手段을 잃어버리고말았다. 전쟁에서 家財를 잃은 13만 9천명을

비롯하여 職場들에서 쫓겨난 동포들은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당장 입에 풀칠할 걱정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不安定한 環境속에서 일본 각지에서는 재일동포들의 團體가 줄을 이어 結成되었으며 民族教育의 礎石으로 되는 國語講習所가 각지에서 開設되었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 25일 재일동포들의 첫 代表機關으로서 在日本朝鮮人聯盟 (략칭 朝聯) 이 結成되었다.

朝聯은 일본정부가 조선인 復員軍人이나 軍用務員, 強制連行者들의 歸國을 우선시키는 가운데 버림받던 一般同胞들의 歸國사업을 독자적으로 支援하였다. 11월부터는 일본 厚生省과 運輸省 등과 交渉하여 귀국자의 一切의 輸送業務를 떠맡았으며 귀국자의 名簿作成, 歸還證明書의 發行, 特別輸送列車의 運行, 乘船手續들까지 하였다.

또한 귀국자들이 가져갈수 없는 財産을 管理하는것과 함께 乘船地에서의 宿泊所의 設置, 船舶의 增配를 요구하였고 歸國同胞援護會, 朝鮮人救護會를 結성하는 등의 活動을 展開하였다.

當時 재일동포의 거의다가 귀국의 날을 一日千秋로 渴望하고 앞을 다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9월말에는 下關에 약 2만명, 博多에는 약 1만명의 동포가 길가에 天幕을 치고 한달이상이나 乘船을 기다리는 狀況였는데 동포들이 계속 물고움으로써 收拾이 안되고 病者들이 續出하였다.

일본의 포츠담宣言 受諾으로 인한 降服文書調印에 의해 9월 2일에 되어서야 聯合軍이 占領軍으로서 일본에 上陸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占領軍政策의 覺書에 따른 指令이 련이어서 나오게 되었다.

GHQ (聯合軍總司令部) 는 11월 1일 일본정부에 대하여 재일조선인의 歸國計劃輸送을 지시하고 11월 13일에는 米軍輸送船에 의한 歸國輸送計劃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11월 18일부터 12월 30일의 사이에 每日 1천명의 귀국자를 수송한다는것이었는데 出航地에서 귀국자들이 수만명이나 待機하고있는 狀況에서 이 계획으로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데다가 赤痢, 치프스患者가 발생하였기때문에 歸國業務를 일시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때문에 독자적으로 배를 傳貰하여 「非合法的」 방법으로 귀국한 동포도 많이 있었다.

日本 厚生省 引揚援護局의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 귀국자수는 해방직후부터 1946년 12월 말까지의 사이에 127만 728명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그외 「非合法的」 방법으로 귀국한 사람은 81만명에 달한다고 推測된다.

이리하여 해방후 재일조선인은 短時日내에 거의다 故郷으로 돌아갔다.

1946년 2월 17일 GHQ는 「朝鮮人, 中國人, 琉球人 및 臺灣人の 登録에 關한 覺書」를 발표하고 재일조선인의 귀국희망자의 등록을 일본정부에 지시하였다.

이 覺書는 6개 項目으로 되어있는데 그 제1항에는 일본에 在住하는 조선인, 중국인, 류큐인 및 대만인은 1946년 3월 18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明記되어있다.

또 제3항에는 귀국을 희망하지 않다고 등록한 사람은 귀국의 권리를 喪失한다는것이, 제4항에는 등록할데 대한 通知를 받으면서도 指定된 날 혹은 그 이전에 등록하지 않았던 者는 귀국의 권리를 喪失한다는것이, 제6항에는 被登録者는 일본정부의 指示에 따라야 하며 그에 違反하면 귀국의 권리를 喪失한다는것이 각각 명기되어있다. 특히 제6항은 제3, 제4항 이외의 새로운 歸國權喪失事由로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注目된다.

이 指示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歸還希望者登録」(3월)을 실시했는데 그에 의하면 당시 재일동포의 總數가 64만 7천 6명이며 귀국희망자는 51만 4천 60명으로 되고 있다. 이 통계로 보면 재일동포의 80%가 귀국을 희망하고 있었던것이 알수 있다.

이어서 GHQ는 같은 해 3월에 「38度線以北에 本籍을 둔 在日朝鮮人の 引揚停止」와, 38度線以南에 本籍을 가지는 재일동포에 대해 「引揚을 希望하는 在日朝鮮人は 日本政府가 指示하는 時期에 出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시를 通達하여 引揚者는 4월 1일 이후 1명당 짐을 250폰드(약 113kg)까지 許可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GHQ는 4월 2일에 「日本에서의 非日本人의 入國 및 登録에 關한 覺書」를 발표하였는데 이날부터 일본정부는 內務省을 중심으로 한 外國人登録과 不法入國을 단속할데 대한 檢討를 시작하였다. 현재의 「外國人登録令」과 「出入國管理令」의 기원은 바로 이 覺書인것이다.

같은 해 5월 7일 GHQ가 「在日朝鮮人引揚에 關한 覺書」를 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朝聯은 在日同胞歸國援護業務를 마치고 일본정부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맡아하게 되었다. 이해 6월 12일에 일본정부가 佐世保歸還援護局에 不法入國者收容所를 開設했는데 이것이 첫 朝鮮人收容所로 되었다.

이뿐만아니라 GHQ는 8월 8일 각서 「朝鮮에로 및 朝鮮으로부터의 引揚의 件」에서 귀국의 業務完了를 12월 15일까지로 정하고 特殊한 사정이 있는 者에 대해서도 12월 31일까지를 限度로 하고 이후 「어떤 경우에도 引揚의 延期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의 귀국마감기한이 결정됨에 따라 제빨리 재일조선인을 對象으로 한 「外國人登錄令」의 公布를 閣議決定하였다. 그러나 GHQ로부터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조인날) 以前부터 在留하고 있는 조선인을 外國인으로 취급하는것은 不當하다는 指摘을 받고 일본정부는 10월 1일부터의 施行豫定을 延期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9월 2일 이전에 일본에 在留하고 있었던 조선인이 일본법률에서는 「舊日本人」이라고 되어있었으며 外國人으로서의 法的處遇가 아직 定해지지 않았기때문이다.

(2)在日同胞의 生活實情

故國에 꿈과 希望을 싣고 돌아간 동포들은 새 조국건설에 邁進하려고 했으나 狀況은예상이외로 어려운것이였다. 조국은 38度線에서 南北으로 分단되고 이북에는 朝鮮軍이, 이남에는 米軍이 駐屯하였다. 조국에 돌아간 재일동포들은 生活基盤도 없고 해서 失意속에서 다시 일본에 密入國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米軍의 발표에 의하면 이남으로부터의 密入國者는 1946년 12월에는 1만 7천 732명이었던데 1948년 5월에는 2만 3천 758명이나 되고 그중 거의다가 本國에 送還되였다 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남반부로부터의 密入國者가 增加함에 따라 그들을 收容하는 施設을 佐世保 (長崎縣)로부터 仙崎 (山口縣), 博多에로 變更하고 1946년에는 長崎縣의 針尾收容所를 開設하였다.

1947년 4월 일본정부는 閣議에서 「外國人登錄令」의 공포를 결정하여 그 4일후 5월 2일에 시행하였다.

그 內容은 우선 「在日朝鮮人은 當分間 外國人으로 規程하고 外國人登錄法의 國籍欄에 『朝鮮』이라고 記入하도록」 指示한다고

되어있다. 이 「外國人登錄令」은 본질에 있어서 일본에 재류하는 조선인의 감시가 목적이며 朝鮮人不法入國者를 단속, 관리하기 위한 罰則 및 強制退去를 規定한 彈壓法이었다.

朝聯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6월 5일에 일본정부 내무성 調査局長으로부터 「外國人登錄令」의 시행에 협력하도록 依賴받았는데 朝聯은 正當한 登錄令이라면 시행에 원칙적으로 응하겠지만 5개 항목의 要求條件을 認定하는것이 前提라고 회답하였다.

5개 항목의 요구라는것은 첫째로 「朝聯은 既成의 登錄에 따라 自主적으로 一括實施한다」, 둘째로 「人權蹂躪 등의 法濫用이 憂慮되는 登錄 및 證明書의 携帶, , 提示義務를 削除할것」, 셋째로 「外國人으로서의 正當한 處遇를 保障할것」, 넷째로 「登錄手續에서 警察을 介在시키지 않는다」, 다섯째로 「寫眞의 添附는 成年에 (이른 者에 대해서) 만 實施하여 寫眞은 公定價格으로 撮影한다」는 것이었다.

朝聯과 日本內務省은 數次에 걸쳐서 協議를 했으나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朝聯은 內務省에 「外國人登錄法」違反과 一般犯罪의 단속을 明確히 分離하도록 再三 촉구했는데 이것도 拒否당하였다. 때문에 朝聯은 6월 16일 「外國人登錄令」의 시행에 앞서 下部組織에 實施協力方法에 대한 基本立場을 밝혔다.

기본립장이란 ①國際公法에 따른 差別的이지 않는 正當한것이라면 拒否할 必要가 없으며 ②登錄令의 本質에 따라 日本政府가 在日朝鮮人에게 外國人으로서의 모든 權益을 確保하며 ③申請의 實行方法은 日本政府가 一方的으로 決定하기전에 朝聯의 각 下部組織을 통해서 互相協議할것 등의 6개 항목이다.

1947년 5월에 외국인등록증명서의 常時携帶義務를 명기한 「外國人登錄令」을 끝내 시행한 일본당국은 1949년에는 그를 더욱 改惡하였다. 在留期間을 3년으로 설정하고 등록을 全國統一番號制로 하였으며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을 強化하는 등 治安立法的인 성격을 더욱 露骨化한것이다.

또한 1946년 8월에는 「出入國管理法」制定을 위한 閣議決定을 하고 같은 해 9월에는 出入國管理連絡協議會를 設立하였다. 이는 재일조선인의 強制追放을 前提로 한것이였다. 實際로 1949년 9월에는 朝聯의 強制解散을 감행하고 그 財産을 沒收했을뿐만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朝鮮人學校閉鎖令을 發令하고 民族教育의 抹殺을 노렸다. 이 시기 요시다 (吉田) 內閣이 GHQ最高司令官 마카시에게 書翰 (1949년 8월 말부터 9월 초순에 보내여졌다고 推定되며 總理府用 편지종이를 使用하고 있다) 을 보냈는데 이 서한은 당시

일본정부가 어떠한 재일조선인對策을 세우려 했는가를 가늠하는데 아주 示唆的이다.

이 서한에서 요시다 (吉田) 內閣은 우선 「나는 이들 조선인모두가 그들의 生國인 半島에 送還될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理由로 첫째로 일본의 食糧事情, 둘째로 조선인의 日本經濟再建 불공헌, 셋째로 犯罪를 들었다. 뿐만아니라 서한에서는 「朝鮮人の 送還計劃」까지 세우고 있었으며 그 與否를 마카시에게 具申하고 있다.

이 서한을 받은 마카시는 在日朝鮮人送還計劃의 實施時期가 不適當하다고 判斷하고 요시다 (吉田) 內閣에로 回답은 보내지 않고 情勢推移를 지켜볼것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그 回答草案에서 마카시는 요시다 (吉田) 內閣의 提案에 거의 同意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3. 外國人登錄法과 出入國管理令

(1)外國人登錄法과 出入國管理令

1947년 5월 2일에 일본당국은 「外國人登錄令」 (포츠담勅令 207號) 를 공포하여 바로 그날에 시행하였다. 이 법의 施行規則은 이날 內務省 28號에 의해 공포되었는데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인에 대한 감시, 단속이 目的이라는것이 明白하다.

「外國人登錄令」에서는 재일조선인의 登錄國籍欄에 당분간 - 조선반도에 正當한 정부가 樹立될 때까지 - 「朝鮮」이라고 記載하도록 되어있다.

이 「外國人登錄令」에 規定된 재일조선인처럼 奇異한 「法的地位」의 소유자는 세계 근대국가의 력사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그 「國籍」은 GHQ에 의해 재일조선인은 日本國籍所有者라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外國人登錄證」의 「國籍」란에는 「朝鮮」이라고 記載된것이다. 그것은 조선반도에는 GHQ나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正當한 국가가 誕生안하고 있기때문에 「朝鮮」이라 나라 이름이나 「국적」이 아니라 단순한 用語라는 해석인것이다.

이 「外國人登錄令」이 공포된 날부터 朝聯을 비롯한 많은 在日朝鮮人團體가 반대운동을 벌렸다. 朝聯은 GHQ에 대해

재일조선인을 정당한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그 生命財産의 保障, 「외국인등록증명서」의 携帶, 提示義務의 삭제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많은 조선인에게 있어서 「外國人登錄證明書」의 휴대, 제시의무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었다. 그것은 등록증에 얼굴寫眞의 添附와 指紋押捺 등이 의무화되어있으며 植民地時期 일제가 조선인을 감시, 단속하는 도구로 리용한 協和會手帖과 같은 樣式이였기때문이다. 조선인을 다시 식민지노예처럼 취급하는가라는 반발이 「외국인등록령」반대운동의 강한 추진력으로 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外國人登錄令」을 끝내 시행하고 그 登錄기간을 194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1947년 12월 17일 GHQ는 「朝鮮人, 琉球人の 送還에 關한 件」을 공포하였는데 1949년 6월 22일 「出入國管理事務局設置에 關한 覺書」에 따라 일본당국은 「出入國管理에 關한 政令」(政令299號)과 「出入國管理連絡協議會令」(政令326號)을 공포하여 재일조선인에 對한 追放준비를 推進하면서 朝聯, 民靑을 強制解散시키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같은 해 11월 3일 GHQ는 새로이 「日本에로의 不法入國의 阻止에 關한 覺書」를 발표하고 종래의 각서를 폐지, 11월 이후는 불법입국방지의 책임을 일본정부에 移管하였다.

1950년 6월 25일 朝鮮戰爭이 일어나자 南半部로부터 일본에 入國하려는 동포가 急增했기때문에 GHQ는 「出入國에 關한 覺書」에 따라 불법입국자의 단속기구와 體制強化를 일본정부에 指示하였다. 이때 李承晩정권의 駐日代表部 金龍周公使는 「左右를 가리지 않고 惡德漢은 強制送還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일조선인은 1949년 12월 13일에 在日朝鮮人同胞人權擁護共同鬪爭委員會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1951년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를 「強制送還反對突擊鬪爭期間」으로 설정하여 운동을 展開하였으나 일본당국은 2월 28일에 司法手續을 排除하여 재일조선인을 國外追放하기 위한 「不法入國者等退去手續令」(政令第33號)을 制定,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政령은 手續上의 문제점이 많았기때문에 包括的인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라는 GHQ의 지령에 따라 1951년 10월 4일에 「出入國管理令」(政令319號)으로 制定되게 된다.

「出入國管理令」은 재일조선인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이며 從來의 治安立法적인 성격을 그대로 繼承하고 그것을 더 한층 발전시킨 법률이다. 또 이 管理令은 「포츠담宣言의 受諾에 따라 發表되는 命令에 關한 件에 基礎한 外務省關係諸命令의 措置에 關한 法律」(法律第126號)에 의해 法律로서의 效力이 附與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出入國管理令」은 미국의 移民法의 形態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률이며 입국과 上陸이 구별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外國인의 入國段階와 領土에로의 上陸段階를 나누고 있다는 측면에서 世界에 그 類例를 찾아볼수 없다.

1952년 4월 산프란시스코條約의 발효로 「外國人登錄令」은 廢止되었는데 재일조선인의 出入國問題와 強制退去問題와 分離되어 하나는 「外國人登錄法」(法律125호)에, 또 하나는 「出入國管理令」(法律126호)에 각각 인계되었는데 이후 「外國人登錄法」과 「出入國管理令」은 재일조선인을 단속하는 2大基本法으로서 機能하게 되었다. 재일동포는 「外國人登錄證明書」의 常時携帶와 提示義務를 강요(外國人登錄法) 당할뿐만아니라 強制追放의 대상(出入國管理令)으로 되는 2중의 責任을 당하게 된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것은 「出入國管理令」에 재일조선인의 國籍得喪의 時期가 1952년 4월 28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以前의 國籍歸屬國에 追放한다고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재일조선인의 外國인으로서의 國籍歸屬國을 법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산프런시스코條約은 조선의 獨立을 承認하고 재일조선인을 外國인으로서 認定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國家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52년이전의 國籍歸屬國에 追放한다고 해도 追放할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出入國管理令」에서는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방의 法規가 存在하고있으니 이것은 명백한 모순일뿐만아니라 人爲的인 人權侵害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본이 독립을 回復한것과 동시에 그때까지 일본法律上 「日本國民」이라고 되고 있었던 재일조선인은 갑자기 旅券을 안가지는 外國人으로 되고말았던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들 外國인에 대해 「在留資格을 가지지 않음에도 在留할수가 있다」고 하면서 다른 법률이 될 때까지의 暫定措置를 취했는데 이것이 재일조선인의 在留權을 不安定한것으로 만든 잘못된 조치였다는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리하여 일본정부는 外國人管理를 위한 治安立法으로서 「出入國管理令」을 發布하였고 「外國人登錄令」을 改惡해서 법률126호의 「外國人登錄法」으로 施行하려 했는데 새로이 指紋押捺制度를 도입하고 罰則을 강화했기때문에 재일조선인의 반대운동에 부딪쳐 수차에 걸쳐서 實施가 연기되었고 법의 공포로부터 3년후인 195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시행되었다.

(2)出入國管理令은 在日同胞의 追放政策

1952년 7월 16일 일본정부는 治安問題를 중요한 議題로 하여 閣議를 열고 세시간 반이나 걸쳐서 法令違反者 125명의 逆送還者의 處置를 포함한 재일조선인문제를 협의하였다. 여기서 結論에 도달한것은 재일조선인을 강제로 隔離하기 위한 「朝鮮人強制收容所」를 설치하고 일본정부가 “不法朝鮮人”으로 지목하는 者들을 이 수용서에 收容하는것과 함께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檢舉第一主義로 臨한다는것을 결정하였다.

이 閣議에서는 「朝鮮人強制收容所」를 외딴섬에 설치하는 案도 나왔고 재일동포의 資産을 凍結하기 위한 調査도 極秘裏에 推進하였다고 한다. 지난시기의 히트라의 「유대인수용소」 혹은 미국의 「日本人收容所」를 방불케 하는 企圖가 平和憲法아래서의 일본에서 再現되려 하였던것이다.

당시 조선전쟁에서 수백만명의 동포들이 死傷되는 悲慘한 現實을 본 재일조선인은 外國勢力에 의한 同族相殘의 悲劇을 끝장내기 위하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조선전쟁의 “特殊需要”로서 不況에서 빠지기 시작했기때문에 전쟁반대의 뼈라 한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즉각 체포되는 事件이 련이어 일어났다.

1952년의 재일조선인의 職業狀況은 63.6%가 無職者였으며 7%가 날품팔이 勞動者였었다. 따라서 일본당국이 生活貧困者, 浮浪者도 強制送還할수 있다는 「出入國管理令」 제24조를 適用하면 언제라도 재일조선인의 70%이상을 強制追放의 대상으로 할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같은 해 11월 下關市議會가 「朝鮮人強制收容所」建設에 반대하는 決議를 한것을 비롯하여 下關市內의 각 勞動組合도 「收容所建設反對期成同盟」을 결성하였다. 또한 12월에는 靑森縣에서 조선인을 남편으로 하는 日本人女性들이 중심이 되어 「朝鮮人強制追放反對委員會」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12월 7일에는

在日朝鮮人強制追放反對鬭爭全國委員會가 결성되고 운동이 全國적으로 展開되었다.

일본당국은 在日朝鮮人團體의 活動을 規制하고 강제추방을 促進하는 目的으로 출입국관리령을 치안립법으로 成立시키려고 劃策하고 있었다.

당시의 「出入國管理令」 제 24 조의 退去事由는 첫째로 不法入國者 및 不法上陸者 (同조항 1호), 둘째로 在留資格外活動者 (동 4호 A), 셋째로 公共負擔者 혹은 其他의 在留者에 대해서도 刑罰法令違反중에서 「外國人登錄法」違反으로 禁錮以上の 刑을 宣告받은 者, 「外國人登錄證明書」의 不携帶罪나 不申請罪로서 懲役 1년 이상의 禁錮刑을 받은 者라면 그 대상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醫療保護, 生活保護 등을 받고 있어도 「公共負擔者」라는 名目으로 強制送還의 對象으로 된다.

4. 1950年代以後의 在日同胞의 在留權

(1)對日講和條約와 韓日會談

산프란시스코講和條約이 발효 (1952년 4월 28일) 하는 직전 일본정부는 「조선인은 講和條約發效의 날로써 日本國籍을 喪失한 外國人이 된다」는 通達을 法務部民事局長名義로 내었다. 講和條約이 發效된 바로 그날에 재일조선인은 갑자기 「日本國籍保有者」로부터 外國人으로 취급당하게 된것이다.

그때까지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의 國籍問題는 國際條約 혹은 「朝鮮半島에 樹立된 正當한 政府」와의 條約에서 明白히 하겠다는 見解를 조선전쟁의 混亂을 리용하여 1장의 法務部民事局長通達로 處理하고 만것이다. 이 「日本國籍의 喪失」은 당사자인 재일조선인의 意向과 意見을 일체 듣지 않고 결정되었다.

산프란시스코條約의 發效로 인하여 從來의 「外國人登錄令」을 改惡한 「外國人登錄法」이 制定되었는데 指紋押捺制度의 導入 등 罰則이 한층 強化되었다.

1948년에 大韓民國이 수립되고 그 이듬해 東京에 駐日代表部가 설치되었는데 당시 李承晩정권은 재일조선인을 韓國의 國民으로서 취급할 方針을 제시하고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登錄證의 國籍欄에 「大韓民國」이라고 記入하도록 要求하였다. GHQ도 韓國을 支援하기 위해 李承晩정권의 要請을 받아들여도록 일본정부에 지시하였다.

일본정부는 尙 樹立된 韓國과 아무런 條約도 맺지 않고 있고 재일조선인의 地位, 處遇問題에 대해 아무런 協議도 進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GHQ의 指示를 拒否하였다. 그렇지만 GHQ의 거듭되는 요구를 끝내 거절할수 없게 된 일본정부는 1950년 2월에 國籍欄에 「韓國」의 名稱을 記入할것을 承諾하였는데 그때도 法務部民事局長通達 「外國人登錄事務取扱에 關한 件」을 발표하여 國籍欄記入에 대하여 「그것은 단순한 用語問題이기때문에 國籍問題나 國家의 承認과 연 關係없는……」라고 그 이전부터 主張하고 있는 「用語說」을 變更하는것이 아니라고 재차 表明하였다.

1951년 10월 東京에서 韓日會談豫備會談이 열렸는데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문제, 在韓日本人의 資産問題, 財産賠償請求權問題, 漁業問題 등이 두 나라 사이의 議題로 설정되었다.

재일조선인의 法的地位問題에는 解放前으로부터의 여러가지 複雜한 문제가 얽혀있다. 일본정부로서도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문제를 決着짓고 싶다는 생각이 짙었다.

李承晩政權은 재일조선인문제가 重要한 문제라는 인식은 있었으나 재일조선인의 立場에서 生存權, 民族權을 보장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한다는 姿勢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재일조선인문제를 주로 韓日회담의 外交的手段으로 리용했다.

1961년 5월 쿠데타로 政權을 奪取한 朴正熙政權에는 緊急課題가 두가지 있었다. 하나는 反共軍事體制를 國內에서 굳히는것이며 또 하나는 國內經濟의 再建과 國民生活을 안정시키는 일이었다. 특히 經濟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일본과의 國交正常化를 다그쳤다. 東아시아反共陣營의 強化와 韓國의 反共軍事政權의 安定을 위해서는 꼭 일본으로부터의 經濟援助가 필요했던것이다. 때문에 韓日間의 歷史的의 問題와 未來를 내다본 兩國關係構築에는 눈을 감고 無償 3억달러, 有償 2억달러 「韓日基本條約」에 調印하고말았다.

한일회담에서 재일조선인문제는 「在日韓國人の 法的地位 및 待遇協定」으로서 처리되었는데 많은 問題點을 남겼다. 그것이 오늘도 계속 여러가지 問題를 일으키고 있고 韓日兩國國民의 國民感情을 刺戟하고 「反日」의 불씨로도 되고 있다.

이 協定에서 在日韓國人은 一般 外國人과 약간의 차이를 認定받았다. 레컨대 일본의 「國民健康保險」에로의 加入이 可能하다든가 國外強制退去事由가 일반 外國人은 懲役 1년을 넘는 刑事罰을 받은 者에게 適用되는데 재일한국인의 協定永住者는 懲役 7년을 넘는 者에게 適用된다 등의 「特惠」이다. 그렇지만 이 「特惠」는 재일조선인 全員을 대상으로 한것은

아니었다. 「大韓民國」의 國民으로 인정되고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韓國」이라고 記入되고 永住申請을 한 者에게만 주어지는것이다. 이것은 結果적으로 재일조선인사회의 南北分斷과 對立激化를 助長하고 朝鮮籍을 가지는 사람들과의 分斷策으로 리용되었다.

微微한 「特惠」이기는 하지만 無權利狀態속에서 얻은 「權利」였기때문에 「韓國籍」으로 바꾸는 사람이 많이 나와 재일조선인사회의 「韓國籍」과 「朝鮮籍」의 比率은 대체로 동수로 되었다.

일본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植民地支配에 대한 戰後處理를 하려고 안하고 또 한쪽과만 戰後處理를 위한 「韓日協定」을 체결했던것이다.

즉 日本정부는 재일조선인의 法的地位문제를 協定에 따른 永住權制度로 解決하려고 한것이다. 그러나 地位協定에는 民族權을 確保하는 條項이 빠지고 있으며 재일조선인의 生存權을 保障하는 處置도 거의 담지 않고 있다.

레하면 就職差別이나 政府系金融機關으로부터의 融資, 公營住宅에 들어가는 문제를 비롯하여 「國籍條項」이 適用되는 日常生活上的 制限이나 排除 등에 대해 아무런 對策도 취해지지 않고있는것이다. 이것은 朴正熙政權이 재일조선인문제에 대해서 거의 몰랐으며 關心도 없었다는것과 당시의 韓國정부가 外交交渉에의 무능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재일조선인은 그후 「地位協定」의 여러 不足部分을 자기들의 힘으로 獲得해나가는 힘겨운 운동을 전개하였다.

거듭 강조하는데 「韓日協定」은 재일동포들사이에 對立을 부추겨 38도선을 일본에 가져다놓았을뿐이며 재일동포의 權益을 擁護하기는커녕 그들을 일본에 팔아넘기는 兇惡한 過誤를 범하였다. 그것은 당시 朴正熙政權이 재일동포는 「日本人으로 될 運命에 있다」고 하여 「日本の 義務教育을 받도록 한다」고 約束한데서도 集約적으로 나타나있다.

이 약속에 따라 일본정부는 1965년 12월에 文部次官通達을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하나는 재일조선인자제에게 「日本の 公立學校의 入學을 認定한다」(文部제 46호)는것이며 또하나는 朝鮮人學校를 認定하지 않는다는 方針밑에 일본의 學校教育法에 따른

「各種學校」로 신청해도 「朝鮮學校는 認可안한다」(文部 3 1 0 호) 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당국이 在日朝鮮人子弟를 일본인으로 同化시키기 위해 企圖한 것이며 식민지시대의 「皇民化教育」의 發想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리하여 1966년부터 조선인학교를 없애기 위한 「外國人學校法案」이 3년 連續으로 일본국회에 上정되었는데 재일조선인과 광범한 일본국민들의 반대에 의해 그때마다 廢案으로 되었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1968년 4월 미노베(美濃部) 東京都知事に 의해 朝鮮大學校가 各種學校로서 正식으로 認可되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法體系안에서 재일조선인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가 守護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1969년부터 1973년까지의 4년간 재일조선인의 在留權을 制限하고 그들의 活動을 規制하는 목적으로 「出入國管理法案」이 國會에 上정되었는데 이것역시 내외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廢案으로 되고 말았다.

(2) 在日同胞와 在留權

일본정부는 1967년 5월 法務省안에 「出入國管理令改正準備委員會」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準備는 그以前 韓日會談에서의 「法的地位協定」交渉과정에서 추진되고있었다.

일본정부는 「出入國管理령」을 改訂하는 理由로서 첫째로, 포츠담政令은 GHQ時代의 管理體制이므로 일본 獨自의인 自主管理體制를 만들 必要가 있으며 둘째로, 觀光客을 포함한 短期旅行者에 대하여 出入國의 手續을 簡素化하기 위한 在留資格을 設置해야 할 必要가 있으며 셋째로, 出入國手續이 簡素化됨으로서 出入國者가 增加하기때문에 不法入國한 不良外國人에 대한 단속을 強化할 必要가 있다는것을 들었다.

엄중한것은 이 법을 解放前으로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재일조선인(法律 126호 該當者)과 그 자제들에게 一律적으로 適用할것을 劃策하였다는 사실이다.

1969년에 公表된 法案改訂의 原案은 在留權全般에 대하여 條件을 附與하고, 外國人에 대한 營業 許可와

認可, 免許制度, 外國人宿泊申告制, 在留狀況調査를 위한 事業調査權 및 搜索權, 條件違反에 대한 中止命令, 行爲命令制度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原案의 문제점은 첫째로, 遵守事項制를 新設한것이다. 이 事項으로 長期在留하는 外國人에게 制限을 가하며 이에 違反한 外國人에게 중지명령, 行爲명령과 處罰 및 退去強制가 가능하게 된다. 이 目的이 재일조선인의 政治活動의 規制에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로, 行程調査權制度를 신설한것인데 이것은 入國調査官 및 警察官의 質問, 文書 혹은 物件의 提示要求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 罰金刑을 들뜨운다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擴大解釋되면 모든 外國人의 在留內容을 干涉하는 可能性이 큼으로 재류권에 대한 엄중한 侵害로 된다.

셋째로, 退去強制手續의 簡素化이다. 당시의 退去強制手續은 入國警備官의 違反調査, 審査官의 審査, 特別審査官의 口頭審査, 法務大臣의 裁決의 4 단계로 되어있는데 이를 入國警備官의 違反調査, 地方入國管理事務所 所長의 口頭審査, 法務大臣의 裁決이라는 3 단계로 하자는것이다. 즉 退去強制手續의 簡素化에 따라 審査가 빨라지고 退去強制措置도 빨리 취할수 있게 된다.

넷째로, 收容과 關聯한 規定 및 送還地의 指定 등의 規定을 改惡하려고 한 점이다. 그리고 假放免保證金を 30 만엔으로부터 100 만엔으로 引上하기로 하였다. 또한 送還地의 指定에 대해서도 당시 施行令에서는 제1차送還地를 「그者の 國籍 혹은 市民權이 있는 나라」로 하고 제2차送還地부터는 그者の 희망을 조건으로 6 개 나라를 指定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69년法案은 제2차送還地를 指定하는데 있어서 本人의 希望을 削除하고 6 번째를 退去를 強制당하는 者가 希望하는 나라로 규정하였다.

다섯째로, 行政訴訟에 의한 救濟를 어렵게 한것이다. 이것은 「韓日條約」締結후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管理政策에 따른것인데 당시는 退去強制書가 濫發되고 그 取消를 요구하는 行政訴訟이 각지 裁判所에 제기되고 있었다.

69년에 提出된 法案이 廢案으로 되자 그 直後 7월에 여당 自民黨의 修正案이 71년법안으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①法律126호該當者 및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문등병환자, 정신장애자, 마약중독자 혹은 公共負擔者로 되어도 당분간 本邦以外에 退去를 強制하지 않는다. ②法律126호該當者의 아이들중

平和條約發效후에 태어난 者에 대해서는 當分간 「本邦에 在留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活動의 範圍 其他事項」의 遵守事項을 附與하지 않기로 한다. ③事實調查權에 의한 不陳述, 虛偽陳述 혹은 文書 등의 提出拒否에 대한 罰則을 없앤다. ④退去強制令을 받은 후 特別在留許可의 出願期間中은 強制送還이 停止되는데 그 기간을 3일로부터 7일로 延期한다. ⑤保釋金의 限度額을 100만엔으로부터 50만엔으로 減額한다. 그리고 附則에서 政治活動禁止의 條項은 法律126호해당자 및 그 아이들에게도 適用된다고 하였다.

이 遵守事項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첫째로, 韓國에 대한 재일조선인의 批判은 일본당국이 이를 國益에 위배된다고 判斷하면 彈壓의 대상으로 된다는것과 둘째로, 入國審査官이 「該當 外國人이 行할 活動을 指定하고 活動할 場所, 機關 등을 指定할수가 있다」는 規定을 新設한것이다.

재일조선인이 基本的人權을 지키기 위해 活動하는것은 特定한 活動이 아니다. 또 外國人이 일본에서 政治活動을 하는것은 마크린判決에 의해 認定되고 있다.

72년法案에서는 종래의 명칭 「出入國管理法案」에서 「管理」를 빼고 「出入國法案」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71년법안의 政治活動禁止條項의 適用問題를 改正하고 법률126호該當者 및 그 아이를 適用에서 除外하였는데 문제로 되는것은 그 部分을 本文이 아니라 附則의 제16조에서 「단분간」 그 적용에서 除外한다고 명기한 측면이다.

본문이 아니라 부칙이라는것과 「當分간」이라는 2중의 暫定的인 規定은 장차 規制를 다시 復活시키려는 意圖가 있는것이다. 또한 在留資格의 種類에 따라 政治活動規制를 差別하는것도 問題視아니할수 없다.

「出入國管理法案」은 1969년, 71년, 72년의 3번 그 形態와 名稱을 바꾸고 國會에 提出되었으나 그때마다 廢案으로 되고말았는데 일본당국은 73년에 4번째로 法案提出을 企圖하였다.

73년법안은 법률126호해당자의 아이들의 在留資格의 根據로 된 소위 「特定在留資格」을 폐지하였다. 그리하여 法務省令에 의해 各 在留資格에 基礎한 在留活動의 內容을 詳細히 規制하였다. 또한 71년, 72년법안의 問題로 된 活動의 種類, 場所, 機關指定의 制度가 吸收되고 폐지되었다.

73년법안에 따르면 재일조선인은 在留資格에 의한 制限以外에도 法務省令에 따라 活動에 種類, 場所, 事業所에 이르기까지 詳細하게 規制당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일본당국은 새로 在留外國人の 身分證明書制度를 導入하려고 했는데 재일조선인의 감시를 強化하는것이라는 内外의 批判을 받고 이 改正法案도 廢案으로 되었다.

(3)出入國管理 및 難民認定法

1981년에 出入國管理 및 難民認定法이 改正되어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는 종래의 不安定한것으로부터 일부가 약간 改善되었다.

改善된 內容은 첫째로, 特例永住權이 新設되었다는것이다. 법률126호該當者와 그 子弟에 대하여 새로 5년간-1982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永住權取得을 申請한 者에게는 無條件的으로 永住權을 許可하기로 되었다. 다만 右의 사람에게는 5년의 期間이 지난후에도 이 特例永住權이 無條件的으로 부여되지만 손자, 증손자는 배제된다.

둘째로, 再入國許可制度가 改善되었다는것이다. 즉 旅行證明書 혹은 再入國許可證을 가지고 1년의 期間내라도 制限付로 再入國할수 있게 되고 (26조 1항), 또한 許可를 받아 出國後 有效期間내에 再入國하지 못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될 때」는 在外領事館에서 더 1년간의 期間延長이 許可되도록 되었다 (26조 4항).

셋째로, 退去強制事由가 整備되었다는것이다. 退去強制事由중 (法24조 4호) C의 「문등병豫防法의 適用을 받고 있는 문등病患者」, D의 「精神衛生法에서 定하는 精神障害者로서 同法이 定하는 精神病院 혹은 指定病院에 收容되어있는 者」, E의 「貧困者, 放浪者, 身體障害者 등으로 生活上 國家 혹은 地方公共團體의 負擔으로 되고있는 者」의 3항목이 削除되었는데 반면에 「覺醒劑取締法의 規定에 反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者」가追加되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法24조 4호인데 I의 「無期 또는 1년을 넘는 懲役 혹은 禁錮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者, 다만 執行猶豫를 言渡받은 者를 除外한다」와 F의 「外國人登録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禁錮이상의 刑을 선고받은 者, 단 執行猶豫의 言渡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의 두가지이다.

특히 自動車運轉에 따른 業務上過失死傷事件의 경우 科刑의 量에 따라서는 退去強制事由로 될수 있다.

넷째로, 迫害國에로의 送還을 禁止했다는것이다. 強制追放의 送還地 (법 5 3 조) 에 關한 規定에 새로 3 項으로서 「法務大臣이 일본의 利益 혹은 公安을 甚하게 해친다고 認定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前 2 項의 나라에는 難民條約 제 3 3 호 제 1 항에 規定되어있는 領域에 屬하는 나라를 포함하지 않은것으로 한다」 라는 規定을 더하였다.

다섯째로는 假放免의 保證金の 引上이다. 現행 保證金の 最高額을 3 0 만엔으로부터 3 0 0 만엔으로 올렸다.

여섯째로, 「難民條約」加盟에 따른 規定이 設定되었다는 점이다. 難民의 一時的保護를 위한 上陸許可, 難民의 認定證明書, 難民旅行證明書, 永住許可의 特例 등의 諸規定이 新設되었다.

이외에 短期滯留者, 技術研修生の 在留資格의 新設, 在留資格의 變更許可, 航空機乘客의 特例上陸許可制度의 新設, 重要犯人等外國人の 出國留保, 出入國手續의 簡素化 등 出入國管理의 「合理化」에 關한것이 있다.

이렇게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의 재류권을 從來의 強權的인 단속방침으로부터 懷柔에로 方向을 轉換시키고 있는데 治安立法的인 性格은 그대로 유지하고있는것이다.

(4)特例法에 의한 在留權

1 9 9 1년 1 1월 1일부터 「日本國과의 平和條約에 基礎하여 日本國籍을 離脫한 者等の 出入國管理에 關한 特例法」 (以下「特例法」으로 表記) 가 施行되었다. 이 法律은 산프란시스코平和條約이 發效한 1 9 5 2년 4월 2 8일 이후도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재일동포의 대부분이 適用對象으로 되고 있다.

이 特例法이 適用된 사람에게는 「特別永住」라는 在留資格이 附與된다. 지금까지의 재일동포의 法的地位나 處遇는 그 國籍이나 世代에 따라서 다르고 安定된것은 아니였지만 이번 法改正으로 從來에 비해 安定된 在留資格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特例法에 따른 特別永住許可者는 그 제 3 조에 의해 「平和條約國籍離脫者 혹은 平和條約國籍離脫者의 子孫」에 대해 다음 네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特別永住權」을 부여한것이다. 그 첫째는

特例法에 의해 削除된 1952년 法律126호 該當者이며 둘째는 特例法에 의해 廢止된 「日本國에 居住하는 大韓民國國民의 法的地位 및 待遇에 關한 日本國과 大韓民國사이의 協定の 實施에 따른 出入國管理特例法」에 기초한 소위 「協定永住」의 許可를 받고 있는 者이며 셋째는 特例法에 의해 削除된 入管法附則9항의 規定에 따른 永住權 (일반적으로 特別永住라고 呼稱되는 永住의 許可) 을 받고 있는 者이며 넷째는 特例法에 의해 削除된 「平和條約關聯國籍離脫者의 아이」의 在留資格 (舊特定在留者-法-4-16-2) 을 가지고 있는 者이다.

여기서 말하는 「平和條約關聯國籍離脫者」란 1945년 9월 2일, 즉 일본이 降伏文書에 調印한 날 以前으로부터 繼續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朝鮮半島出身者로서 산프란시스코平和條約의 規定에 따라 平和條約發效日인 1952년 4월 28일로 日本國籍을 離脫한 者이며, 그 平和條約國籍離脫者의 아이란 1945년 9월 3일부터 1952년 4월 28일의 平和條約發效日까지 일본에서 出生하고 그후도 계속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者로서 平和條約發效로 日本國籍을 離脫한 者이다. 또 特例法이 施行된 이후 일본에서 出生하는 平和條約關聯國籍離脫者의 子孫 (舊特定在留者-法-4-16-2) 은 出生日로부터 90日以內에 居住地域의 市區町村의 長을 통해서 法務大臣에게 特別永住許可申請을 하면 「特別永住」를 許可되기로 되어있다 (特例法제4조). 그외에 平和條約關聯國籍離脫者 및 그 子孫들, 레컨대 朝鮮籍의 父親과 일본인 母親사이 에 出生한 아이로 日本國籍을 離脫한 者, 永住者의 配偶者 등, 定住者 (舊特定在留者-法-4-11-3) 의 在留資格을 가지고 있는 者는 地方入國管理局에 法務大臣앞으로 許可申請하면 「特別永住」를 許可되기로 되어있다 (特例法제5조).

이번 法改正의 特徵은 再入國許可의 有效期間에 대한 特別措置이다. 종래는 朝鮮籍인 特別永住者와 소위 「協定永住者」간에서 差別政策이 存在하였으며 朝鮮籍所有者에 대해서는 再入國許可有效期間이 제일 길어서 1년까지밖에 認定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再入國許可期間을 3개월간만으로 하는것으로 제일조선인을 抑壓하고 있었다. 이번 法改正에서 「特別永住者」의 再入國許可有效期間이 4년으로 되고 事情에 따라서는 더 1년 延長하는 許可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最長 5년간의 再入國許可期間이 認定되게 된것이다.

단 한가지 遺憾한것은 特別永住의 資格者라고 하더라도 退去強制를 당할수 있는 事由가 남은것이다.

退去強制에 관해서도 종래는 「協定永住者」가 7년 이상의 懲役刑을 받은 者만 退去強制的 대상으로 되었던것에 비해 特例永住者는 1년 이상의 懲役刑을 받은것만으로 強制退去를 당하고 있었다. 朝鮮籍所有者에 대해 露骨的으로 差別하고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이번 法改正으로 이 差別이 解消되기는 했으나 재일조선인이 의연히 退去強制的 대상자로 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變함이 없다.

1979년 6월 일본정부는 「國際人權規約」의 A와 B 兩規約를 批准하고 1981년에는 「難民條約」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일동포문제에 대하여 立法措置를 취하지 않으면 안였으며 이때 처음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社會保障과 國民年金加入이 認定된것이다. 그리하여 1991년 비로소 複雜하게 얽혀있었던 在日同胞의 在留權問題가 特例法으로서 정리되었다.

일본정부는 산프란시스코講和條約發效이후 「特別한 法律」이 생길 때까지 一時的인 在留資格만 부여하였으며 始終一貫해서 재일동포문제를 治安問題와 결부하여 재일조선인을 단속대상으로 지목하고 管理體制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在留權問題를 死活的인 問題로 여기는 재일동포들은 半世紀에 걸치는 期間 廣範한 운동을 벌여왔다. 일본정부가 부족하지만 安定된 在留權을 재일조선인에게 부여한데는 이러한 各界各層 동포들의 꾸준한 노력과 피땀이 깃들어있는것이다.

時代가 바뀌어 새世紀에 들어선 오늘 재일동포들앞에는 또 새로운 課題가 나서고 있다. 일본에는 아직도 就職差別이 있고 國際結婚, 日本人으로 歸化하는 現象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처럼 재일동포사회에서 民族性을 지키는 문제가 切實하게 제기된바가 없는것이다.

本來 民族이란 피줄과 言語, 歷史, 文化를 共有하는 사람들이 歷史的으로 構成된 公同體이다. 그 共同體를 끊어져 나가는것이 바로 새世代이다. 다음 世代의 主人公들인 그들이 民族性을 가져야 재일동포사회의 民族性도 지켜지는것만큼 현시기 제기되고 있는 民族性問題는 재일동포사회의 運命을 左右하는 死活的인 問題라고 할수 있다.

解放後 재일동포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臨時的인것으로 생각하고 언젠가 반드시 故國에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生活하는 과정에 世代가 바뀌여지고 일본에 永住할것을 選擇한 이후는 異國땅에서 어떻게 民族性을 지키면서 살아갈것인가를 摸索하였다. 일본사회에서 全體 재일동포가 民族性을 지키는 共通된

마당에서 和解와 團合을 더 한층 促進하여 일본사람과 어떻게 「共生」해나가겠는가는 문제가 새로운 課題로 나서고 있는것이다. 이 문제는 재일동포들의 큰 試鍊으로 되지만 재일동포들의 在留權의 歷史를 考察하는것은 이 試鍊을 克服해나가는데서 아주 重要的 意義를 가지고 있다고 確信한다.